

소송허가결정 공고문

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556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표시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 1. 서원일

(대표당사자)

2. 방성오

3. 문종열

4. 이광복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김석배, 이해욱, 박동원, 박서진, 최상현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평

담당변호사 김학성, 정재섭, 이승훈

피 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대표이사 서명석, 타이완국인 귀밍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남정우

2.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인수하도록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 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3. 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492,5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동양그룹 계열사였다가 2014. 6 .경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Yuanta Financial Holdings)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등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동양그룹의 계열사로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동양은 아래와 같이 회사채(이하 동양이 발행한 제262회 내지 제268회 회사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순번	회사	발행일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신용평가등급
1	㈜동양 제262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2012. 10. 29.	2012. 10. 15.	2012. 10. 25.	BB+
2	㈜동양 제263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2012. 12. 23.	2012. 12. 7.	2012. 12. 20.	BB0
3	㈜동양 제264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2013. 2. 22.	2013. 2. 7.	2013. 2. 20.	BB0
4	㈜동양 제265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2013. 5. 6.	2013. 4. 11.	2013. 5. 2.	BB0
5	㈜동양 제266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2013. 6. 19.	2013. 6. 4.	2013. 6. 17.	BB0
6	㈜동양 제267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2013. 7. 17.	2013. 7. 3.	2013. 7. 15.	BB0
7	㈜동양 제268회 무보증 옵션부 사채	2013. 8. 28.	2013. 8. 13.	2013. 8. 26.	BB0

다. 피고는 동양 회사채 모집주선단의 일원으로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집계 및 청약관계서류의 총괄 등 모집주선사무를 주관하였고, 2013. 2 .경부터는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하지 못하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회사채 인수주관사와 위장투자자를 내세워 동양의 회사채 1/2 상당을 인수하게 한 다음 이를 즉시 피고가 매수하여 다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이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그 첨부서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이라 한다)에 동양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이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존재하고, 그 사항들은 모두 동양이 당시 회사채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① 2007. 1 .경 리더스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의 본질이 악성적 돌려막기식 차입거래라는 사실 및 2010. 2 .경 위 거래로 인하여 동양이 자본잠식에 이르게 된 경위 은폐

② 2010. 12.경 다물제6호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거래의 본질이 동양의 핵심사업인 레미콘 및 건재사업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매출채권 및 각종 기계설비 등을 처분한 것이라는 사실

③ 2012. 9 . 회사채 발행자금 무단 전용에 의한 계열사 탈법 지원에 따른 동양의 부도 위기 도래 사실

④ 2012. 10. 18. 동양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하여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한남동 빌라 등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546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 사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하여 모집주선인 내지 투자설명서의 교부자로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이 사건 회사채 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바. 피고는 또한, 위와 같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 누락한 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판매하고 그로 인하여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채 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제외신고

가. 제외신고

- (1) 제외신고는 구성원이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2)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접 위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소송의 판결 및 소송상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즉,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나.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건 소송허가 결정의 확정 후 고지를 받은 날(법령에 의하여 고지받은 날로 간주되는 날 포함)부터 60일 내에 제외신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부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신고서 양식은 첨부된 문서와 같으며,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seoul.scourt.go.kr)의 「양식」란의 '민사재판'항목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구성원의 권한

- (1)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착수금은 없음, 성공보수는 '위임인을 포함한 구성원 총원'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총 분배금(총 손해배상금)의 삼(3)%(부가가치세별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1)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 (2)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은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지숙

제외신고서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1. 서원일
(대표당사자) 2. 방성오
3. 문중열
4. 이광복

피 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은/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20 . . .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귀중

◇ 유 의 사 항 ◇

1.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